

부패척결을 위한 법집행 관련 국제협력 및 정보 공유 강화에 관한 고위급 원칙

오늘날과 같이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부패 범죄의 예방, 적발, 수사 및 기소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의 변화하는 특성에 적응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LEA)은 부패 척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EA는 관할권 경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특정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간 협력은 물론 협력 메커니즘을 통한 기관 및 국가 간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부패 범죄를 예방, 적발, 수사하고 범죄자를 기소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법 집행 협력에 관한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제 48 조는 당사국이 협약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 집행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국의 국내 법률 및 행정 체계에 따라 서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1997 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방지에 관한 협약(OECD 뇌물방지협약), 이슬람협력기구 회원국의 반부패 법 집행 협력에 관한 마카 알 무카라마 협약(2023) 등 다양한 다자간 협약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랍 반부패 협약(2010), 미주 반부패 협약(1996), 아프리카 연합 부패 방지 및 퇴치에 관한 협약(2003) 등의 지역 협약에도 부패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및 정보 공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해당되는 경우). 부패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LEA 간의 국제 협력은 일반적으로 양자 간 사법공조(MLA) 조약, 다자간 협약, 협정 및 협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부패 예방, 적발, 수사 및 기소를 위해 LEA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조치를

(비공식 번역본)

취함으로써 기존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20 국가들은 2022-2024 년 반부패 행동계획에서 기술 전문가와 관련 다자 포럼 및 네트워크를 소집하여 법률, 국경 간 정보 공유 및 운영 절차에 대한 모범 사례를 교환함으로써 각국이 국제 협력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및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G20 ACWG 는 정보 공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¹ . 또한 다자간 협약²은 관할 당국 간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ACWG 의장이 의뢰한 '법 집행 협력' 및 '정보 공유 프로세스 강화'에 관한 2021 씽크피스에서도 효과적인 법 집행 협력의 다양한 과제를 강조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G20 ACWG 의 이전 작업을 기반으로 한 이 고위급 원칙은 국내 프레임워크, 법률 시스템 및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그리고 이를 침해하지 않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LEA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G20 국가들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위급 원칙의 목적상 '부패'는 UNCAC 에 규정된 범죄를 포괄합니다.

원칙 1: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 법 집행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 또는 유지합니다.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 법 집행 협력을 활성화하고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관할권이 다른 LEA 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 유지 및/또는 강화해야 합니다.

G20 국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¹ 2013 G20 사법공조에 관한 고위급 원칙, 2014 G20 실소유주 투명성 고위급 원칙, 2016 G20 부패 및 자산회복 대상자 협력 고위급 원칙, 2020 G20 부패 및 경제범죄, 범죄자 및 도난자산 회수에 관한 국제협력 행동

²² 예를 들어, UNCAC 제 46 조(사법공조), 제 48 조(법집행 협력), 제 56 조(특별 협력) 및 OECD 의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협력 제 9 조(사법공조)가 있습니다.

1. 필요한 경우 입법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 자국의 LEA 가 다른 국가의 LEA 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부패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제 공조를 위해 LEA 및 기타 관련 당국 간의 조정을 개선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합니다
3.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합의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LEA 간의 효과적인 정보 교환을 위해 LEA 가 체결할 수 있는 모델 계약 또는 약정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4. 직접 협력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UNCAC 를 부패 사건에 대한 상호 법 집행 협력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5. 국내 프레임워크, 법률 시스템 및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공동 및/또는 병행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³.
6.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위한 기존 채널의 가용성과 유용성에 대한 국내 LEA 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G20 입국거부 전문가 네트워크(DoEEN), G20 반부패 법집행 기관 글로벌 운영 네트워크(GlobE 네트워크) 등 G20 ACWG 에서 시작된 네트워크와 같은 기존 법집행 네트워크⁴에 참여하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회원국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용한 네트워크에는 인터폴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CARIN, 지역 ARIN, 에그몽 그룹, FATF, OECD 초국가적 뇌물방지 글로벌 법집행 네트워크(GLEN), OECD 뇌물방지 법집행관 실무그룹(LEO) 등이 있습니다

³ UNCAC 제 49 조 및 OECD 뇌물방지협약 제 19 조

⁴ 2022-2024 G20 반부패 행동계획

원칙 2: 부패 척결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당국 간의 협력 채널을 활용합니다

각기 다른 관할권의 LEA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포함한 관련 당국 간의 협력은 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표적화된 조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MLA 사전 협의 및 지원을 통해 요청 국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보다 공식화되고, 타겟팅된, 잘 뒷받침된 MLA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MLA 요청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련 당국이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다른 적절한 형태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G20 국가들은 국내 프레임워크, 법률 시스템 및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i. 1. 부패와 관련된 조사에서 법인 및 범죄 수익 등 이해관계자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식별, 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공개 정보에는 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신원, 소재지 및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부패와 관련된 조사에서 법인을 포함한 관심 대상자와 관련된 은행 계좌 및 기타 금융 자산의 존재 여부에 관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 협력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
3. 부패와 관련된 조사에서 정부 발행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

4. MLA 요청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LEA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협력을 통해 범죄 수익금⁵ 및 부패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는 재산, 장비 또는 기타 도구의 이동에 대해 적절한 조회를 수행합니다.

5. 부패와 관련된 조사에서 자산 동결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MLA 요청에 앞서 형식, 문구 및 추가 국내 법적 요건과 관련하여 관련 외국 당국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청하고 적절한 경우 협력해야 합니다

원칙 3: 수익성 있는 소유권 정보의 유지 및 공유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 보장

G20은 2014년 수익적 소유권 투명성에 관한 고위급 원칙에서 적절하고 정확하며 최신의 수익적 소유권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이미 권고안 24, 25를 통해 회원국에게 법인의 투명성과 수익적 소유권 및 계약에 관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G20 ACWG 책임 보고서 2020 및 2021에서는 적절하고 정확하며 최신의 수익적 소유권 정보를 유지하는 것을 과제로 지적하고, 부패 행위자가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할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규제 제도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G20 국가들은 수익적 소유권 정보의 가용성과 접근성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G20 국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적절하고 정확하며 최신의 수익적 소유권 정보를 수집, 유지, 검증 및 공유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⁵ UNCAC 제 2 조(e)에 정의

(비공식 번역본)

2. FATF 기준에 따라 관할 국내 당국이 적절하고 정확하며 최신의 수익적 소유권 정보에 적시에 효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국내법에 따라 LEA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협력을 포함하여 관할 당국이 접근할 수 있는 수익적 소유권 정보의 효율적인 국가 간 공유를 촉진합니다.
4. 공개 도메인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당되는 경우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산 등록부, 회사 등록부 또는 수익적 소유권 등록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른 국가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원칙 4: 부패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정보 공유 강화

적시에 수사를 수행하고 기소를 가능하게 하려면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사법공조를 촉진하기 위해 UNCAC 제 46 조 4 항에 따라 당사국은 해당 정보가 부패와 관련된 조사 및 절차의 착수 또는 성공적인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요청 없이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G20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UNCAC의 이러한 조항과 다른 협정의 유사한 조항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G20 국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자발적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함께 조약 조항 및 해당되는 경우 외국 상대방과의 자발적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에 대한 국내 LEA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비공식 번역본)

2. 해당 정보가 관련 관할권의 LEA가 부패와 관련된 조사 및 절차를 수행하거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고 국내법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조사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요청 없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3. 자발적인 정보 교환이 부패 관련 수사, 기소 및 관련 절차를 지원한 다른 국가와 기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면서 모범 사례 및 사례 연구를 공유합니다.

원칙 5: 신기술 및 신흥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 집행 기관의 역량 향상

LEA는 부패 척결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과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국가들은 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과제를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G20 국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MLA 및 MLA 프로세스에서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자원을 적절히 할당합니다.
2. 해당되는 경우,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 문제를 다룰 때 법 집행 실무자의 제도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합니다.
3. 다른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용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비공식 번역본)

4. 부패 조사에 관여하는 실무자 간의 정기적인 참여⁶를 촉진하는 등 여러 국가의 관련 당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관행을 이행합니다 (LEA와 해당 당국 간의 협력 협약 및 프로그램 체결 검토 포함).

5. 신기술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완화 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6. 국내 프레임워크가 이를 지원하는 경우, 발신 상호 사법공조 요청을 디지털 형식으로 전송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수신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이러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집행 협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원칙 6: 협력과 관련된 양자 조약 및 다자 협약을 통해 교환된 정보를 부패 수사 및 기소를 위해 LEA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모색

기존의 양자 간 MLA 조약 및 기타 다자간 협약은 특정 목적을 위한 국가 간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G20 반부패 행동계획 2022-2024에서 G20 국가들은 부패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관련 반부패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 당국과 FIU 간의 정보 교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각국은 사용 제한 및 기밀 유지 요건 등 조약에 따른 법적 의무에 따라 조약에 따라 교환된 정보의 사용 및 관련 절차에 대한 모범 사례 공유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⁶ 여기에는 반부패 법집행 당국 글로벌 운영 네트워크(GlobE 네트워크), 인터폴, G20 입국거부 전문가 네트워크(DoEEN), OECD 초국가적 뇌물방지 글로벌 법집행 네트워크(GLEN), OECD 뇌물 법집행 공무원 실무그룹(LEO) 등과 같은 다른 그룹, 지역 및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도 포함 가능

(비공식 번역본)

G20 국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적절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공유된 정보 및 증거에 부과된 사용 제한 또는 조건에 따라 국내 LEA 간에 MLA 요청에 따라 수신한 정보 및 증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2. 해당 조약 및 협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용 제한 조항과 같은 기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해당 조약 및 협약, 국내 규정 및 출처 국가의 승인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약 교환 정보를 다른 국내 LEA 와 추후 공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조세 조약에 따른 과세 당국 및 FIU 의 정보 교환이 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부패 절차에서 LEA 의 활동을 지원하는 관심 관할권의 모범사례 및 사례 연구를 공유합니다
